



국회의사당 511호, 전화: 02-784-3255, 팩스: 02-788-0270, 문의: 강민서 비서  
홈페이지: <http://www.yajeong.or.kr>, 트위터: @ya\_jeong, 페이스북: /yajeong

## ‘노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면 개편해야

- 교육부 시스템 한계 봉착,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여 ‘백년지대계’ 세워야
  - 유 위원장, “정권 따라 바뀌는 근시안적 교육정책 대신,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해 장기적 비전 수립해야”
- 잇따른 정책 혼선과 소속공무원의 비리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11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초정권적인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립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두고 ‘오년지소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

화 추진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진보적 사관을 대거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이후 벌어진 수능정책 혼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도 교육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더욱이 지속 되어온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피아’로 표현되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조사 내용과 내부 고발자 정보를 해당 사립대에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 대표발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팡질팡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형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유성엽 의원

찬 성 자 : 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교육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립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를 신설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 교육개혁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다양한 교육주체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⑤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언론·노동·보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 11명 중 상임위원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3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위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고, 3명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위원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

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 다.

제8조(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교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 관련 예산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5.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국정도서의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및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학생 건강증진·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안건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질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 관계 법령 및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교육부의 소관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가 행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5.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교육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립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를 신설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상 관련 법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부총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를 “부총리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행위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략)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생략)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  
-----  
-----1명-----.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  
-----  
-----부총리가-----  
-----  
-----  
-----  
-----  
-----  
-----  
-----.

제26조(행정각부) ① -----  
-----

다.

1. (생략)

2. 교육부

3. ~ 17.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  
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들  
수 있다.

ㄱ.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1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